

◉ 운영규정 ◉

노인복지법 제22조 제2항 [별표5]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준수
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.[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]

1. 조직 인사

근무체계 : 어르신2.3명당 요양보호사 1인배치, 시설장1. 사회복지사1. 간호조무사1(2).
요양보호사 12. 조리원1.

2. 입소정원

입소정원 : 시설입소 29명

모집방법 :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, 지역사회 홍보, 이용자 및 보호자 소개 모집

3.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*계약기간 : 인정서의 유효기간. (이용자 및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 달리 할 수 있음.)

*계약목적 : 노후의 건강증진, 생활안정도모 및 그 가족의 부담경감 하여 삶의 질 향상.

*월이용료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수가 기타 비용(식자재,간식,상급침실료등)

*시설의무 : 장기요양서비스 제고 계약서에 기초

*공단의무 :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서비스에 대한 공단부담금제공

*보호자의무 : 계약해지 원하는 경우 최소 15일 전 시설 통지 후 계약해지

*시설의 계약 해지요구

: 건강상 문제로 장기 입원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 중단시

: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계약 내용외에 직원에게 무리한 요구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: 입소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의 시설 내 난동, 직원에 욕설 및 폭언으로 시설 및 직원의
명예를 실추시킨 경우

4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/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규정 준수

*첨부파일참고

5.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/ 노인장기요양법 제 23조 제1항 제2호,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2조 2항

*일상생활서비스 : 옷벗고입기, 세수, 양치질, 식사하기, 목욕하기, 체위변경, 이동도움,
화장실 사용하기등.

*보건/의료서비스 : 협력병원, 촉탁의 협약 및 투약등

*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와 가족연계 서비스.

*신체,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, 여가지원 프로그램 운영, 심리 정서적 안정 위한 정기 상담.

*낙상 및 욕창등을 예방,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,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

*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, 식품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 철저.

6. 특별한 보호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

*특별보호를 요하는 경우라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 하는 것으로 격리보호,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, 경관튜브제거방지를 위한 구속,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구속등을 의미하며 보호자 동의 없이 실행은 불가함.

*다인실 이용 도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될 경우 특별침실을 사용하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 부담.

7.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

*간호조무사의 활동 -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관련일지 기록

*촉탁의 진료 활동 - 한달에 2회 방문,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/가족부담

*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- 응급상황 발생시 또는 주보호자, 기타 가족과의 상담 후 외래진료 가능(진료비 본인 또는 가족부담)

8.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

*시설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중 입소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.

*다만,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 없음.

*시설은 화재보험,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등에 가입.

9. 운영위원회 설치, 운영에 관한 사항

*위원회는 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

-시설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

-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
-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

-그 밖의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
-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
-시설 입소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

-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
-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

-그 밖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

안내문

□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○ 2025년 장기요양수가는 2024년 대비 노인요양시설이 **3.93%**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.

♠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84,240원에서 90,450원(+1,242)으로 인상예정입니다.

< 2025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수가 >

♠ 2025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수가

인력기준 (개선안)	등급	1일 비용 (24년)	본인부담 금(20%)	1일 비용 (25년)	본인부담 금(20%)	인상액 (7.37%)
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.1명당 1명	1	84,240	16,848	90,450	18,090	1,242
	2	78,150	15,630	83,910	16,782	1,152
	3,4,5	73,800	14,760	79,240	15,848	1,088

(단위: 1일, 원)

♠ 간식비는 2024년과 동일합니다.

♠ 식사재료비는 1식 200원 (1식 * 3회 = 600원) 인상됩니다.

♠ 본인부담금 비교

(단위 : 30일기준, 원)

등급	24년(20%)	25년(20%)	식사재료비	간식비	상급침실료	총액
1	505,440	542,700	225,000	30,000	60,000	857,700
2	468,900	503,460	225,000	30,000	60,000	818,460
3,4,5	442,800	475,440	225,000	30,000	60,000	790,440

♠ 3등급 30일기준 **37,260원** 인상됩니다.